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6월 1일

군산시 조례 제 1029호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으로 한다.

제24조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영업용 | |
|------------|--------|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 1,000시시 이하 | 80원 |
| 1,600시시 이하 | 140원 |
| 1,600시시 초과 | 200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 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 제16조(납기) -----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생략) | |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영업용</th> <th colspan="2">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시시 이하</td> <td>18원</td> <td>800시시 이하</td> <td>80원</td> </tr> <tr> <td>1,600시시 이하</td> <td>18원</td> <td>1,000시시 이하</td> <td>100원</td> </tr> <tr> <td>2,000시시 이하</td> <td>19원</td> <td>1,600시시 이하</td> <td>140원</td> </tr> <tr> <td>2,500시시 이하</td> <td>19원</td> <td>2,000시시 이하</td> <td>200원</td> </tr> <tr> <td>2,500시시 초과</td> <td>24원</td> <td>2,000시시 초과</td> <td>220원</td> </tr> </tbody> </table> | | 영업용 | | 비영업용 |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 18원 | 800시시 이하 | 80원 | 1,600시시 이하 | 18원 | 1,000시시 이하 | 100원 | 2,000시시 이하 | 19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2,500시시 이하 | 19원 | 2,000시시 이하 | 200원 | 2,500시시 초과 | 24원 | 2,000시시 초과 | 220원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th> <th colspan="2"><현행과 같음></th> </tr> <tr> <th>-----</th> <th>-----</th> <th><현행과 같음></th> <th><현행과 같음></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1,000시시 이하</td> <td>80원</td> </tr> <tr> <td>-----</td> <td>-----</td> <td>1,600시시 이하</td> <td>140원</td> </tr> <tr> <td>-----</td> <td>-----</td> <td>1,600시시 초과</td> <td>200원</td> </tr> <tr> <td>-----</td> <td>---</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td> <td>---</td> <td><삭제></td> <td><삭제></td> </tr> </tbody> </table> | | | ----- | | <현행과 같음> | | ----- |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 ----- | 1,000시시 이하 | 80원 | ----- | ----- | 1,600시시 이하 | 140원 | ----- | ----- | 1,600시시 초과 | 200원 | ----- | --- | <삭제> | <삭제> | ----- | --- | <삭제> | <삭제> |
| 영업용 | | 비영업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시시 이하 | 18원 | 800시시 이하 | 8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0시시 이하 | 18원 | 1,000시시 이하 | 1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0시시 이하 | 19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0시시 이하 | 19원 | 2,000시시 이하 | 2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0시시 초과 | 24원 | 2,000시시 초과 | 22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시시 이하 | 8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0시시 이하 | 14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0시시 초과 | 2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6. (생략) | | 2. ~6.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 영업용 | | 비영업용 | |
|------------|--------|------------|--------|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 1,000시시 이하 | 18원 | 1,000시시 이하 | 80원 |
| 1,600시시 이하 | 18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 2,000시시 이하 | 19원 | 1,600시시 초과 | 200원 |
| 2,500시시 이하 | 19원 | | |
| 2,500시시 초과 | 24원 | | |

부칙 <법률 제11110호, 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6월 1일

군산시 조례 제 1030호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 조성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련단체”란 시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관할 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시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3. 관할 경찰서 경찰공무원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임원
5.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6.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7. 군산시의회 의원
8. 관내 중·고교의 재학생 중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 2인 이내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시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협의회는 안전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및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2-1178호

군산시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징수조례 개정조례 입법예고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 월명종합경기장내 각 경기장 명칭 부여 및 각 조항의 일부내용을 수정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익과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이용료 일부 인상과 족구장 조명사용료·야구장 광고물사용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체육시설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개정법규명

-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 1)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목적 일부 개정 - (안 “제1조”)
- 2)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정의 일부 개정 - (안 “제2조제1호”)
- 3)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사용허가 일부 개정 - (안 “제3조제①항”)

- 4)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사용제한 일부 개정 - (안 “제5조제4호”)
- 5)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사용시간 일부 개정 - (안 “제9조제5항”)
- 6)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 일부 개정 - (안 “제12조제①항”)
- 7)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매표 및 검인 일부 개정 - (안 “제22조제②항”)

나.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신설

- 1)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사회체육지도자의 수당지급 신설 - (안 “제19조제②항”)

다.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일부 신설 및 개정 - (안 “제 10조”)

- 1) 족구장 전용사용료 징수규정 신설 - (안 “별표1”)
- 2) 수송·생말·금강공원축구장 전용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 - (안 “별표1”)
- 3) 테니스장 이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 - (안 “별표2”)
- 4) 부대시설 사용료 중 족구장 조명사용료 신설 - (안 “별표3”)
- 5) 시설사용료 중 게시등 부착광고물 사용료 신설 - (안 “별표5”)
- 6) 월명실내수영장 이용료 일부개정 - (안 “별표6”)

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체육시설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3-430 군산시 변영로 281번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과

(전화:452-2924, FAX:452-2927)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과 운영담당(452-2924)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군산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경기장(잔디구장, 육상트랙)·테니스장·야구장·게이트볼장”를 “월명주경기장·월명테니스장·월명야구장·월명게이트볼장·월명족구장”으로 하고, 같은조 “금강공원축구장 등 정식 인정대회가 가능한 표준시설”을 “금강공원 축구장·군산시공도장 등 정식 인정대회가 가능한 표준시설”로 한다.

제3조제①항 중 “운동경기나 연습 또는 그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체육시설(주경기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를 “운동경기나 연습 또는 그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군산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사용료 체납등)”로 한다.

제9조제⑤항 중 “실내수영장의 개장시간은 06:00~18:00까지로 한다.”를 “월명 실내수영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20:00, 토요일 06:00~18:00, 공휴일 09:00~18:00까지로 한다.”

제12조제①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로 한다.

제19조 중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를 ①항으로 하고 같은조 “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내에서 강습을 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을 ②항으로 한다.

제22조제②항 중 “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입장권·선수증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를 “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입장권·선수증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월명야구장, 월명족구장, 수송공원축구장, 생말공원축구장, 금강공원축구장 초과요금 및 전용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 사용목적 | 전용사용료(원) | | 비 고 |
|---------------|------|-----------------|--------|-------------------------|
| | | 휴 일 (토요일 포함) | 평 일 | |
| 월 명 야 구 장 | 체육경기 | 50,000 | 40,000 | · 야구경기는 1게임(4시간) 원칙 |
| | 체육이외 | 105,000 | 60,000 | ·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 |
| 월 명 족 구 장 | 체육경기 | 10,000 | 5,000 | · 2시간 기준 |
| 수송공원 축 구 장 | 체육경기 | 30,000 | 20,000 | · 2시간 기준 |
| | 체육이외 | 100,000 | 60,000 |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
| 생말공원 축 구 장 | 체육경기 | 30,000 | 20,000 | · 2시간 기준 |
| | 체육이외 | 100,000 | 60,000 |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
| 금강공원 축 구 장 | 체육경기 | 30,000 | 20,000 | · 2시간 기준 |
| | 체육이외 | 100,000 | 60,000 |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

○ 이후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상기 “전용사용료”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2 체육시설 이용료 중 월명테니스장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 기 간 | 개 인 (1인당 이용료) | 비 고 |
|-----------------|------|------------------|-----|
| 월명테니스장 (1면당) | 2시간당 | 2,000 | |

별표3 부대시설 사용료 중 족구장 및 냉·난방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종 별 | 기 준 | 금 액 |
|------|-------|--|
| 음향시설 | 1일 1회 | ○ 월명체육관 : 100,000원 + (5,000원×마이크수) ○ 월명주경기장 : 20,000원 + (5,000원×마이크수) ○ 월명야구장 : 20,000원 + (5,000원×마이크수) |
| 조 명 | 1일 1회 | ○ 월명야구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월명테니스장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단,클럽회원 월 조명사용료 : 시간당관허요금×사용시간×20일×1면) ○ 월명주경기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월명체육관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월명족구장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 냉·난방 | 1일 | 전기료 및 연료대금(냉방은 전기료) |

별표5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 중 게시등 부착광고물(야구장 외야 펜스)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
| 에드별론 게양 | 1일 1개 | 30,000원 (1일초과 5,000원/일) | |
| 게시등 부착 광고물 (월명야구장, 월명 주경기장) | 건당 1.2m × 10m이내 | 5일이내 100,000원 (1일초과 10,000원/일) | 기준면적 초과 광고물설 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 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 게시등 부착광고물 (월명야구장 외야펜스) | 건당 2m × 8m이내 | 1,000,000원 (당해년도에 한함) | |

별표6 월명실내수영장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 받은 자임.(1일 1회에 한함)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체육시설"이라 함은 월명종합경기장 주경기장(잔디구장, 육상트랙)·테니스장·야구장·게이트볼장·월명체육관·월명실내수영장·월명공원테니스장·수송공원축구장·생말공원축구장·금강공원축구장 등 정식 인정대회가 가능한 표준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제3조(사용허가) ① 운동경기나 연습 또는 그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체육시설(주경기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p> <p>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1.----- <u>월명주경기장·월명테니스장·월명야구장·월명게이트볼장·월명족구장</u>·월명체육관----- -----금강공원축 구장·<u>군산시궁도장</u> 등 정식 ----- ----- -----말한다.</p> <p>제3조(사용허가) ① ----- -----위하여 <u>군산시 체육시설</u> <u>(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u>의 ----- ----- <u>인터넷</u>, 전화, 우편, 팩스로도 ----- ----- -----.</p> <p>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 -----있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p>1. ~ 3.(생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제9조(사용시간) ① ~ ④(생략) ⑤실내수영장의 개장시간은 06:00~18:00 까지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p> <p>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이용 료를 감면·할인할 수 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u><신설></u></p> <p>제22조(매표 및 검인) ②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입장권·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p> | <p>1. ~ 3.(현행과 같음) 4. 기타-----인정할 때 <u>(사용료 체납 등)</u></p> <p>제9조(사용시간) ① ~ ④(현행과 같음) ⑤<u>월명</u>실내수영장의 <u>운영</u>시간은 <u>평일06:00</u> <u>~20:00, 토요일06:00~18:00, 공휴일09:00</u> <u>~18:00</u>까지로 한다. 단, 시장이----- -----있다.</p> <p>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시장은 ----- -----있다. ①다음----- -----감면할 수 있다. <u>다만,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u></p> <p>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①<u>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u> <u>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u> <u>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u> <u>할 수 있다.</u> ②<u>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u> <u>내에서 강습을 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u> <u>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p>제22조(매표 및 검인) ②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입장권·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u>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u> <u>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u> <u>생략할 수 있다.</u></p> |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구 분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 | 사용목적 | 휴 일 (토요일포함) | 평 일 | 초 과 요 금 | 사용목적 | 휴 일 (토요일포함) | 평 일 | 초 과 요 금 | |
| 주 경 기 장 | 우레탄 트랙 | 체육경기 75,000 | 50,000 |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 ----- | ----- | ----- | |
| | | 체육이의외 105,000 | 70,000 | | ----- | ----- | ----- | ----- | |
| | 인조잔 디구장 | 체육경기 | 75,000 | 50,000 | · 축구경기는 1게임 (2시간)원칙(초과 게임당2할 가산) | ----- | ----- | ----- | ----- |
| | | 체육이의외 | 105,000 | 70,000 | ·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 ----- | ----- | ----- |
| 야 구 장 | 체육경기 | 50,000 | 40,000 | · 야구경기는1게임 (4시간) 원칙 <u>(초과게임당 5할가산)</u> | ----- | ----- | ----- | · 야구경기는1게임 (4시간) 원칙 <u><삭제></u> | |
| | 체육이의외 | 105,000 | 60,000 | · 4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 ----- | ----- | · 4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 테니스장 (1면당) | 체육경기 | 15,000 | 10,000 | 8시간표준초과시 | ----- | ----- | ----- | ----- | |
| | 체육이의외 | 17,000 | 12,000 | 표준액의1/2가산 | ----- | ----- | ----- | ----- | |
| 월명체육관 | 체육경기 | | | | ----- | ----- | ----- | ----- | |
| | - 주간(1회) | 60,000 | 40,000 | 8시간 표준초과시 | ----- | ----- | ----- | ----- | |
| | - 야간(1회) | 90,000 | 60,000 | 표준액의1/2가산 | ----- | ----- | ----- | ----- | |
| | 체육이의외 | | | | ----- | ----- | ----- | ----- | |
| | - 주간(1회) | 300,000 | 200,000 | 8시간 표준초과시 | ----- | ----- | ----- | ----- | |
| | - 야간(1회) | 450,000 | 300,000 | 표준액의 1/2가산 | ----- | ----- | ----- | ----- | |
| 족 구 장 | 체육경기 | <u>무료</u> | <u>무료</u> | <u><신설></u> | 체육경기 | <u>10,000</u> | <u>5,000</u> | <u>· 2시간 기준</u> | |
| | 체육이의외 | | | | 체육이의외 | | | | |
| 수송공원 축 구 장 | 체육경기 | 30,000 | 20,000 | · 2시간 기준 <u>(초과게임당 2할 가산)</u> | 체육경기 | 30,000 | 20,000 | · 2시간 기준 <u><삭제></u> | |
| | 체육이의외 | <u>50,000</u> | <u>30,000</u> | · 4시간 기준 (표준초과시 5할 가산) | 체육이의외 | <u>100,000</u> | <u>60,000</u> | · 4시간 기준 (표준초과시 5할 가산) | |
| 생말공원 축 구 장 | 체육경기 | 30,000 | 20,000 | · 2시간 기준 <u>(초과게임당 2할 가산)</u> | 체육경기 | 30,000 | 20,000 | · 2시간 기준 <u><삭제></u> | |
| | 체육이의외 | <u>50,000</u> | <u>30,000</u> | · 4시간 기준 (표준초과시 5할 가산) | 체육이의외 | <u>100,000</u> | <u>60,000</u> | · 4시간 기준 (표준초과시 5할 가산) | |
| 금강공원 축 구 장 | 체육경기 | 30,000 | 20,000 | · 2시간 기준 <u>(초과게임당 2할 가산)</u> | 체육경기 | 30,000 | 20,000 | · 2시간 기준 <u><삭제></u> | |
| | 체육이의외 | <u>50,000</u> | <u>30,000</u> | · 4시간 기준 (표준초과시 5할 가산) | 체육이의외 | <u>100,000</u> | <u>60,000</u> | · 4시간 기준 (표준초과시 5할 가산) | |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시간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는 야간사용자로 간주함
- 등록장애인은 50%를 할인 징수함
- <신설>

- -----
- -----
- -----
- -----
- 이후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상기 “전용사용료”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체 육 시 설 이 용 료

(단위 : 원)

| 구 분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 기 간 | 개 인 (1인당 이용료) | 비 고 | 기 간 | 개 인 (1인당 이용료) | 비 고 |
| 주경기장(육상트랙) | 2시간당 | 300 | | ----- | ----- | |
| 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 | " | 2,000 | | ----- | ----- | |
| 야 구 장 | " | 2,000 | | ----- | ----- | |
| 테 니 스 장 (1면당) | " | <u>1,000</u> | | ----- | <u>2,000</u> | |
| 월 명 체 육 관 | " | 1,000 | | ----- | ----- | |

(현 행)

- 어린이의 이용료는 기본료의 70%를 징수함.
- 단체는 동일종목 1개팀(동일소속) 2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기본료의 80%를 징수함
- 월 회원 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을 징수함
-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은 1면당 200,000원을 징수한다.
(단, 1면당 사용인원을 30인 이하로하며, 각종 경기등 행사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테니스 수강료는 월 50,000원을 징수한다. (단, 수강료 납부한자는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기본료의 50%를 징수함.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별표 3]

부대시설사용료

| 구분 | 현행 | | 개정안 | |
|-------|-------|--|-----------|--|
| | 기준 | 금액 | 기준 | 금액 |
| 전기 | 1 시간당 | 관허요금 | ----- | ----- |
| 음향시설 | 1일 1회 | 월명체육관: 10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주경기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야구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 | 월명주경기장 월명야구장 |
| 전광판 | 1일 1회 | 2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 | ----- |
| 조명 | 1일 1회 | ○야구장: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테니스장(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단, 클럽회원 월 조명사용료: 시간당관허요금×사용시간(20일1번) <u>신설</u> ○주경기장: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체육관: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 | ○월명야구장 ○월명테니스장 ○족구장: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월명주경기장 ○월명체육관 |
| 권투링 | 1일 1회 | 20,000원 1일 초과하는 매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 | <u>삭제</u> | <u>삭제</u> |
| 후로링가바 | 1 일 | 50,000원 1일 초과하는 매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 ----- | ----- |
| 배구 매트 | 1 일 | 200,000원 1일 초과하는 매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 | ----- | ----- |
| 냉 난방 | 1 일 | 전기료 및 <u>유류대</u> (냉방은 전기료) | ----- | 전기료 및 <u>연료대금</u> (냉방은 전기료) |
| 수도료 | 1 회 | 수도사용 및 설비 | ----- | ----- |
| 무대사용료 | 1 회 | 30,000원 | ----- | ----- |
| 집기사용료 | 1 회 | 연설대 1개당: 1,000원 탁사 1개당: 500원 의자 1개당: 철제 100원 목재 200원 | ----- | ----- |

(현행)

- 한 경기장에 전광판 조명타워 등 2개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 전기 기본 요금은 1개 시설에만 적용
- 1일 1회라 함은 사용자가 1회의 경기 또는 공연시에 사용함을 기준함. 단, 동일한 사용자가 1일에 2회이상 연속 사용하기 위하여 1회 입장료 이상의 금액으로 매표하였거나(야구의 경우 더블헤더), 2회에 걸쳐 매표(사용)할 때는 2회 사용으로 적용한다.

(개정안)

- -----
- -----
- -----
- -----
- -----

타 시·군 조례(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비교표

◇ 테니스장(1면 8시간 기준)

(단위:원)

| 시.군별 | 사용구분 | 휴일 (토요일포함) | 평 일 | 초과요금 |
|------|------|---------------|--------|----------|
| 군산시 | 주간 | 15,000 | 10,000 | - |
| | 야간 | 15,000 | 10,000 | 조명사용료 별도 |
| 익산시 | 주간 | 15,000 | 10,000 | - |
| | 야간 | 15,000 | 10,000 | 조명사용료 별도 |
| 김제시 | 주간 | 10,000 | 8,000 | - |
| | 야간 | 15,000 | 10,000 | - |
| 고양시 | 주간 | 32,000 | 24,000 | - |
| | 야간 | 64,000 | 48,000 | - |
| 김천시 | 주간 | 40,000 | 20,000 | - |
| | 야간 | 50,000 | 30,000 | - |
| 목포시 | 주간 | 18,000 | 12,000 | - |
| | 야간 | 27,000 | 18,000 | - |

◇ 족구장(1면 8시간 기준)

(단위:원)

| 시.군별 | 사용구분 | 휴 일 (토요일포함) | 평 일 | 초과요금 |
|------|------|----------------|-----|------|
| 익산시 | 주간 | - | - | - |
| | 야간 | - | - | - |
| 김제시 | 주간 | - | - | - |
| | 야간 | - | - | - |

타 시·군 조례(체육시설 이용료) 비교표

◇ 테니스장(1인 2시간 기준)

(원)

| 시.군별 | 사용구분 | 휴 일 (토요일포함) | 평 일 | 초과요금 |
|------|------|----------------|-------|----------|
| 군산시 | 주간 | 1,000 | 1,000 | - |
| | 야간 | 1,000 | 1,000 | 조명사용료 별도 |
| 익산시 | 주간 | 4,000 | 4,000 | - |
| | 야간 | 4,000 | 4,000 | 조명사용료 별도 |
| 김제시 | 주간 | 2,000 | 2,000 | - |
| | 야간 | 2,000 | 2,000 | 조명사용료 별도 |
| 고양시 | 주간 | 8,000 | 6,000 | - |
| | 야간 | 9,600 | 7,200 | - |
| 김천시 | 주간 | 2,000 | 2,000 | - |
| | 야간 | 2,000 | 2,000 | 조명사용료 별도 |
| 목포시 | 주간 | 2,000 | 2,000 | - |
| | 야간 | 3,000 | 3,000 | - |

◇ 족구장(1면 2시간 기준)

(원)

| 시.군별 | 사용구분 | 휴 일 (토요일포함) | 평 일 | 초과요금 |
|------|------|----------------|--------|----------|
| 익산시 | 주간 | 10,000 | 5,000 | - |
| | 야간 | 10,000 | 5,000 | 조명사용료 별도 |
| 김제시 | 주간 | 6,000 | 5,000 | - |
| | 야간 | 36,000 | 35,000 | - |
| 부안군 | 주간 | 무료 | 무료 | - |
| | 야간 | 무료 | 무료 | 조명사용료 별도 |

군산시 고시 제2012-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96호 외5개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5월 18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구암동 316-1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96호 외5개노선)사업
 - 나. 명 칭 : 구암동 신애원앞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구분 | 노 선 명 | 결정조서 | | 금회 실시계획인가 | | | 미개설 | | 비 고 |
|--------|---------|-------|-------|-----------|-------|---------------------|-------|-------|-----|
| | | 폭원(m) | 연장(m) | 폭원(m) | 연장(m) | 면적(m ²) | 폭원(m) | 연장(m) | |
| 도 로 | 소로2-296 | 8.0 | 541 | 8.0 | 440 | 3,513 | 8.0 | 101 | |
| | 소로2-293 | 8.0 | 65 | 8.0 | 65 | 520 | | | |
| | 소로3-285 | 6.0 | 67 | 6.0 | 67 | 402 | | | |
| | 소로2-295 | 8.0 | 61 | 8.0 | 61 | 488 | | | |
| | 소로3-289 | 6.0 | 52 | 6.0 | 52 | 312 | | | |
| | 소로3-290 | 6.0 | 71 | 6.0 | 71 | 426 | | | |
| 계 | | | | | | 5,661 | | | |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5 ~ 201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계획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계획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65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6. 1. ~ 6. 15.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58건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별 도 열 램 | | | | |

○ 도로명주소 변경 : 2건

| 지번주소 | 변경된 도로명주소 | 종전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별 도 열 램 | | | | | |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 종전 지번주소 | 폐지된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부여 사유 |
|---------|--------------|---------|--------------|-------------|
| 별 도 열 램 | | | | |

○ 관련지번 변경 : 34건

| 도로명주소 | 변경된 지번주소 | 종전 지번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부여 사유 |
|---------|-------------|------------|------------|--------------|-------------|
| 별 도 열 램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10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922호선, 소로2-92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5월 18일

1. 공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102-2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922호선, 소로2-924호선)사업
 - 2) 명 칭 : 임피면 소재지 옆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구 분 | 노 선 명 | 결정조서 | | 실시계획인가 | | | 비 고 |
|--------|---------|-------|-------|--------|-------|---------------------|-----|
| | | 폭원(m) | 연장(m) | 폭원(m) | 연장(m) | 면적(m ²) | |
| 도 | 소로2-922 | 8.0 | 137 | 8.0 | 137 | 1,107 | |
| 로 | 소로2-924 | 8.0 | 111 | 8.0 | 111 | 951 | |
| 계 | | | 248 | | 248 | 2,058 |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6. ~ 2013.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11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5월 25일

1. 공람기간 : 도보계재 다음 날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신평동 902-30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6호선)사업
 - 2) 명 칭 : 신평동2통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구분 | 노 선 명 | 시설결정 | | 기개설 | | 금회 실시계획인가 | | | 비 고 |
|----|--------|------------|------------|------------|------------|-----------|-------|---------------------|-----|
| | | 폭원(m)) | 연장(m)) | 폭원(m)) | 연장(m)) | 폭원(m) | 연장(m) | 면적(m ²) | |
| 도로 | 소로2-66 | 8 | 172 | 8 | 27 | 8 | 145 | 1,315 | |
| 계 | | | 172 | | 27 | | 145 | |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6. ~ 2013.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2-1196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 5. 31.

군 산 시 장

1.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2년 1월 1일

나. 개별필지수 : 185,992필지 (해망동 990-1번지의외 185,991필지)

다. 공시사항

1) 개별 단위 면적 : m²

2) 개별필지별가격 : 원

라. 열람안내

1) 시청 토지정보과(1층)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2) 군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2. 5. 31 ~ 6. 29(30일간)

나.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시청 토지정보과(1층) 및 각 읍·면사무소(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기간내에 제출
(서식비치 :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장조사와 재검증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450-6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